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보건안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등급 1명, 5·6등급 1명), 민족공동체 해외협력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 공관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재외공관에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3·4등급 1명) 및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외교부에 각종 소·다자경제협의체 대응, 공급망 관련 협력 등 경제외교 역량강화를 위하여 인력 3명(5·6등급 3명)을 증원하고 양자경제외교국의 일부 분장사무를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으로 조정하고, 국제 기술 규범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교섭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원 1명(7등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등급 1명)하여 배정하고, 민주주의 국제협력 총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5·6등급 1명)을 증원하고, 영토해양 관련 홍보인력 2명(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재외공관 경제분야 인력 1명(5·6등급 1명), 산업통상자원 분야 주재관 인력 1명(4급 1명), 기타 재외공관 필요인력(5·6등급 10명)을 증원하고, 기타 외교부 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국과 동북아국 간 분장사무조정,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

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 정원 9명(5·6등급 4명, 3·4등급 2명, 8급 1명, 9급 2명)과 재외공관 등 소속기관 정원 9명(5·6등급 3명, 3·4등급 3명, 4급 1명, 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인력 2명(3등급 또는 4등급 2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외교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5. ~ 12.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제7호 중 “다자간”을 “핵안보 및 다자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유엔의 군축·비확산”을 “군축·비확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핵 군축·군비통제·비확산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사항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연구 업무

제14조의2제6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시

행 및 조정”을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양자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9. 양자 수출통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15조제3항 중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 및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을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지역”을 “지역과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7.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제22조제4항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제4항 중 “양자경제외교총괄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유럽경제외교과”를 “유럽경제외교과·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경제외교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을 “유럽경제외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나우루·네팔·

뉴질랜드 · 마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몰디브 · 바누아투 · 방글라데시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쿡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를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으로, “밖의 남태평양도서국가와”를 “회원국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를 각각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를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중전의 제17호) 중 “제16호”를 “제15호”로 한다.

제27조제7항제1호 중 “동티모르 · 라오스 · 말레이시아 · 몽골 · 미얀마 · 베트남 · 브루나이 · 싱가포르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캄보디아 · 태국 · 필리핀”을 “몽골 · 일본 · 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호(중전의 제7호) 중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을 “북미경제외교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미합중국 · 캐나다 · 튀르키예 ·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를 “미합중국 · 캐나다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미합중국 · 캐나다 · 튀르키예 ·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를 각각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미합중국 · 캐나다 · 튀르키예 ·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를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의”를 “제9호까지”로 한다.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를 포함한 공급망 관련 소·다자협약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

제28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조정

10. 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조정

11. 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원회의 관리·운영

⑤ 국제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한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국제기구 및 협의회와의 신흥·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민간 이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관련 교섭 및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3. 양자간 신흥·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의 상업적·민간 이용 및 정

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관련 교섭 및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정 체결 및 교섭

5. 주요 국가의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법률 및 규범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6. 신흥·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34조제1항 단서 중 “같다”를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을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을 “주벨기에왕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기구대한민국대표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을 “유럽경제외교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71”을 “972”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서기 “30”을 “29”로 하고, 행정서기보 “29”를 “2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6”을 “4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2”를 신설하며, 외무공무원 계

“722”를 “723”으로 하고, 8등급 외무공무원 “68”을 “69”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0”을 “116”으로 하고,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5”를 “162”로 하며,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를 “18”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5”를 “12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971”을 “974”로 하고,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7”로 하며, 행정서기 “30”을 “29”로 하고, 행정서기보 “29”를 “28”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46”을 “45”로 하고, 전문경력관 가군(비상안전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홍보담당) 2”를 신설하며, 외무공무원 계 “722”를 “7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8등급 외무공무원 “68”을 “69”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110”을 “116”으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65”를 “162”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9”를 “18”로 하며, 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1”을 “33”으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125”를 “123”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 계 “109”를 “108”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3”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109”를 “108”로 하고, 일반직 계 “44”를 “43”으로 하며, 운전서기보 “5”를 “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외무공무원 계 “1,442”를 각각 “1,449”로 하고,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208”을 “218”로 하며,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273”을 “272”로 하고,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254”를 “252”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기술규범과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	----	----------------

별표 5 제2호1)의 평가기간란, 같은 호 2)의 평가기간란, 같은 호 3)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호 4)의 평가기간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3등급·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00000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5·6등급 7명, 3·4등급 5명, 8급 1명, 9급 3명, 4급 1명, 5급 1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 ③ (생략)	제14조의2(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원자력외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④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다자간 핵연료주기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u>	7. <u>핵안보 및 다자간</u> ----- -----
8. ~ 10. (생략)	8. ~ 10. (현행과 같음)
⑤ 군축비확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⑤ ----- ----- -----.
1. <u>유엔의 군축·비확산 분야 활동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1. <u>군축·비확산</u> ----- ----- -----
2. <u>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연구</u>	<삭제>
<신설>	3. <u>핵 군축·군비통제·비확산에 관한 사항</u>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u>핵 비확산 및 핵안보에 관한 사항</u>	<삭제>
<신설>	6. <u>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u>

<u>5. · 6. (생략)</u> <u>7.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사항</u> <u>8. 유엔 전문기구 중 정보·통신, 우주·위성 관련 기구에 관한 사항</u> <u>9. 다자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 및 총괄</u> ⑥ 수출통제·제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보좌한다. 1. ~ 6. (생략) <u><신설></u> <u>7.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관련 외교정책의 시행 및 조정</u> <u><신설></u> <u>8. (생략)</u>	<u>4. · 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u> <u>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u> <u>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비확산 분야에 관한 사항</u> <u>9.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연구 업무</u> ⑥ ----- ----- -----. 1. ~ 6. (현행과 같음) <u>7. 양자 제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u>8. ----- -----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u>9. 양자 수출통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u>10. (현행 제8호와 같음)</u>
--	--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②
(생략)

③ 아시아태평양국심의관은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 및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와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생략)

⑧ 아태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3.·4. (생략)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② (생략)

③ 동북아시아국심의관은 몽골·중국 및 그 지역에 관한 외교정책의 조정업무 및 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 ⑦ (생략)

제15조(아시아태평양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일본·서남아시아·태평양지역-----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삭 제>

<삭 제>

1.·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6조(동북아시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역과 한국·일본·중국 3국간 협력-----

-----.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동북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22조(개발협력국) ① ~ ③ (생략) ④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u>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⑤ 개발의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⑥·⑦ (생략)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③ (생략)	⑧ ----- -----. 1. ~ 4. (현행과 같음) <u>5.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u>6. 한국·일본·중국 3국 간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u> <u>7.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제22조(개발협력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3.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 -----. 1. ~ 7. (현행과 같음) <u>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 ⑥·⑦ (현행과 같음) 제27조(양자경제외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양자경제외교국에 양자경제
외교총괄과・동아시아경제외교
과 및 북미유럽경제외교과를 둔
다.

⑤ (생략)

⑥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나우루 · 네팔 · 뉴질랜드 · 마셜제도 · 마이크로네시아 · 몰디브 · 바누아투 · 방글라데시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스리랑카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쿡제도 · 키리바시 · 통가 · 투발루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호주 및 그 밖의 남태평양도서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 시행 · 평가 및 총괄 · 조정

2.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업체 의 운영

3.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4.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④ ----- 유럽경제외
교과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및
북미경제외교과-----
--.

⑤ (현행과 같음)

⑥ 유럽경제외교과장-----
-----.

1.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

-- 회원국과 -----

2.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

3.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

4. 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u>그 회원국과</u> ----- ----- ----- -----
5. <u>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영국, 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 또는 다</u> <u>자</u> -----
6. 삭 제	
7. ~ 15. (생략)	7. ~ 15. (현행과 같음)
16. <u>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한 업무 협조</u>	<u><삭 제></u>
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u>제16호까지</u>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6. ----- ----- <u>제15호</u> ----- ----- --
18. (생략)	17. (현행 제18호와 같음)
⑦ 동아시아경제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u>동티모르·라오스·말레이시아·몽골·미얀마·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일본·중국·캄보디아·태국·필리핀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조정</u>	1. <u>몽골·일본·중국</u> ----- ----- ----- ----- -----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생 략)

<신 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캐나다·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평가 및 총괄·
조정

2. 미합중국·캐나다·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외교 및 경제협의회
의 운영

3. 미합중국·캐나다·튀르키예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
양자경제에 관한 대외교섭 및
대외교섭의 총괄·조정

4. 미합중국·캐나다·튀르키예

5. 제1호에 규정된 각 국가를 포
함한 공급망 관련 소·다자협
의체의 운영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8.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 관
한 업무 협조

9. ----- 제8호-----

--

⑧ 북미경제외교과장-----
-----.

1. 미합중국·캐나다와-----

--

2.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

3.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

4. 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

· <u>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u> 경제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 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 에 관한 사항	----- ----- ----- ----- -----
5. <u>미합중국·캐나다·튀르키예</u> · <u>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과의</u> <u>양자 또는 다자 자유무역협정</u> 체결·이행의 외교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u>제1호에 규정된 국가와의</u> -- ----- -----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8의2. (생략)	9. (현행 제8호의2와 같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 <u>호의2의</u>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 <u>제9호까지</u> ----- ----- -----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 ③ (생략)	제28조(기후환경과학외교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에너지과학외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u>원전수출지원공관의 관리·</u> <u>조정</u>
<신설>	10. <u>과학기술거점공관의 관리·</u> <u>조정</u>
<신설>	11. <u>외교부 과학기술외교자문위</u> <u>원회의 관리·운영</u>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생략)

<신설>

12. ----- 제11호-----

--

13. (현행 제10호와 같음)

⑤ 국제기술규범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국가전략기술 등을 포함한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
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
정

2. 국제기구 및 협의체와의 신
흥·첨단기술(과학기술, 우주
의 상업적·민간 이용 및 정
보통신 분야 등을 포함한다)
규범 관련 교섭 및 협력에 관
한 외교 업무

3. 양자간 신흥·첨단기술(과학
기술, 우주의 상업적·민간 이
용 및 정보통신 분야 등을 포
함한다) 규범 관련 교섭 및 협
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국가전략기술을 포함한 신흥
·첨단기술 관련 양·다자 협
정 체결 및 교섭

5. 주요 국가의 신흥·첨단기술
관련 외교정책, 법률 및 규범

⑤ · ⑥ (생략)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 ③ (생략)

형성에 관한 조사·연구

6. 신흥·첨단기술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외교적 지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

의 협조

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4조(외교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같

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2명

(3등급·4등급 영사직 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2

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2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독일연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프랑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 주뉴욕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문화원장,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문화원장을 말한다.

③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제3항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러시아연방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오이시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주제네바유엔및국제기구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주칠레공화국대한민국대

제37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겸주국제해사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③ -----

사관 공사참사관,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
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카
 자흐스탄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사우디아라비아
 왕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
 관, 주아르헨티나공화국대한민
 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홍콩대
 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로
 스엔 켈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부총영사, 주브라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공사, 주이집트
 아랍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공
 사참사관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정책홍보담당관, 전략조정담
 당관, 국제법규과장, 문화교류
 협력과장, 지역경제기구과장,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 녹색환
 경외교과장 및 국립외교원 외국
 어교육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
 로 보할 수 있다.

----- 주벨기에왕국
대한민국대사관겸주유럽연합대
한민국대사관겸주북대서양조약
기구대한민국대표부 -----

 -----.

④ -----

유럽경제외교과장-----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971</u>		<u>972</u>	+1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u>6</u>		<u>7</u>	+1	
시설사무관							
	.		.		.		
	.		.		.		
행정서기			<u>30</u>		<u>29</u>	-1	
	.		.		.		
	.		.		.		
행정서기보			<u>29</u>		<u>28</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6</u>		<u>45</u>	-1	
	.		.		.		
전 문 경 력 관							
<u>나군(홍보담당)</u>			<u><신 설></u>		<u>2</u>	+2	

외무공무원 계	<u>722</u>	<u>723</u>	+1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8</u>	<u>69</u>	+1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10</u>	<u>116</u>	+6
•	•	•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5</u>	<u>162</u>	-3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19</u>	<u>18</u>	-1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125</u>	<u>123</u>	-2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외교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71</u>	• <u>974</u>	+3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u>	<u>7</u>	+1
•	•	•	
•	•	•	
행정서기	<u>30</u>	<u>29</u>	-1
•	•	•	
•	•	•	
행정서기보	<u>29</u>	<u>28</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46</u>	<u>45</u>	-1
•	•	•	
전 문 경 력 관			
<u>나군(홍보담당)</u>	<신 설>	<u>2</u>	+2
외무공무원 계	<u>722</u>	<u>725</u>	+3

.	.	.	
.	.	.	
8등급 외무공무원	<u>68</u>	<u>69</u>	+1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110</u>	<u>116</u>	+6
.	.	.	
5 등급 · 6 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165</u>	<u>162</u>	-3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19</u>	<u>18</u>	-1
.	.	.	
3 등급 · 4 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u>31</u>	<u>33</u>	+2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125</u>	<u>123</u>	-2
.	.	.	
.	.	.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		
			<u>109</u>		<u>108</u>	-1	
		•	•	•	•		
		•	•	•	•		
일반직	계		<u>44</u>		<u>43</u>	-1	
		•	•	•	•		
		•	•	•	•		
운전서기보			<u>5</u>		<u>4</u>	-1	
		•	•	•	•		
		•	•	•	•		

[별표 2의2]

국립외교원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09</u>	• <u>108</u>	-1
•	•	•	
•	•	•	
일반직 계	<u>44</u>	<u>43</u>	-1
•	•	•	
•	•	•	
운전서기보	<u>5</u>	<u>4</u>	-1
•	•	•	
•	•	•	

[별표 3]

대한민국재외공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1,442</u>	• <u>1,449</u>	+7
외무공무원 계	<u>1,442</u>	<u>1,449</u>	+7
•	•	•	
•	•	•	
5등급 또는 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u>208</u>	<u>218</u>	+10
5 등 급 • 6 등 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u>273</u>	<u>272</u>	-1
•	•	•	
•	•	•	
3등급 또는 4등급 영사직공무원	<u>254</u>	<u>252</u>	-2
•	•	•	
•	•	•	